의 안 번 호

2069

##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4. 7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4. 7.(금)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4. 25.(화)

#### 2. 제안이유

- 용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전문가수 확대와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고,
- 용역진행상황 점검 시 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의무규정을 두어 기존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정비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용역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 확대: 5명 → 8명(안 제4조)
- 다. 위원의 해촉,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, 제4조의3)
- 라. 용역실명제 규정 신설(안 제12조의2)
- 마.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규정 신설(안 제12조의3)
- 바. 용역진행상황 점검 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참여 규정 신설(안 제13조)
- 사. 용역진행상황 점검 시 참여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마련(안 제 17조)
- 아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3조 ~ 제16조)

### 4. 근거법규

○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54조

#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인 전문가 수 확대와 위원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용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# 근 거 법 규

##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

- 제54조(정책연구의 공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2. 18.>
  - 1.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
  - 2.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
  - 3.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
  - 4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4. 2. 18., 2017. 10. 17.〉③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〈신설 2014. 2. 18.〉